

## ■ 판례 동향

HS 해설서를 통해  
호 용어의 의미를  
판단한 품목분류  
판례해설

## ■ 품목분류 동향

제8404호[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  
절약기·과열기·그을음  
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 개정법령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2월 2일(통권 제2109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한·조지아 EPA 체결 “자동차 수출 시 관세 0%”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18 관세행정안내**

국내 판매자가 최종 송품장을 발행한 경우(수입국 발행 송품장)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24 질의응답사례**

손가락·젓가락의 HS Code

**판례동향****26 관세판례해설**

HS 해설서를 통해 호 용어의 의미를 판단한 품목분류 판례해설

**품목분류동향****33 품목분류해설**

제8404호[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46 품목분류 M.A.P**

스탬프용 박 분류 사례

**51 세번 바로잡기**

플라스틱 필름

**53 상식 밖의 상품학**

지구 온난화, 다이아몬드로 막는다

**최신개정법령****56 부령**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58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한·조지아 EPA 체결 “자동차 수출 시 관세 0%”

조지아, 유럽·아시아 교역 관문으로 공급망·에너지 분야 잠재력 有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타결됐다. 발효 즉시 승용차와 K-푸드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우리나라의 시장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조지아와의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국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 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PA는 FTA처럼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조지아는 구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46개국과 FTA를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인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라시아 노선(중국·카스피해·조지아·유럽)에 위치해 러·우 전쟁 이후 물동량이 급증하며 이목을 끌었다.

조지아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IMF는 2024년 조지아의 실질 GDP 성장률을 4.8%, 2025년 5.2%, 2026년 5.2%로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 조계권 아제르바이잔 바쿠무역관은 올해 1월 ‘2024년, 견조한 성장이 전망되는 조지아’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 정부가 예측한 2023~2026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5.1%”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조지아의 교역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교역액은 약 2억 달러로 우리의 對조지아 무역수지는 약 1억 9,000만 달러 흑자다. 對조지아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아연도금강판, 합성수지 등으로 특히 승용차가 수출액의 47.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주요 수입품은 기타정밀화학원료, 직물류, 동피 및 스크랩 등이다. 우리의 對조지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3억 4,000만 달러다.

## ■ 韓 주력 수출 품목 승용차·중고차 관세 즉시 철폐

이번 한·조지아 EPA로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100%, 조지아 측은 99.8%다. 양국은 즉시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3가지 카테고리로 관세 철폐에 합의했으며, 발효 시점에 한국 86.8%, 조지아 90.6%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관련된 신차와 중고차,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즉시 전면 철폐된다. 특히 조지아는 배기량 및 제조년도를 기반으로 관세를 산출해

중고차 관세가 신차보다 높고 전체 승용차 수입 중 중고차 비중이 약 65.3%(2020~2022년 평균)에 달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승용차 산업이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고차 분야에서도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라면, 조미김, 삼계탕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K-푸드와 對조지아 수출이 2019년 82만 4,000달러에서 2023년 519만 6,000달러로 증가한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ChaCha),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한국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다만 쌀과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과 슬래그(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지아의 수출유망품목인 완성의류와 관련해 對조지아 수입이 증가한 남성바지(합성섬유), 티셔츠(인조섬유), 여성윈드재킷(합성섬유) 등의 품목은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자 관세를 10년 최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 ■ 조지아 거점으로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한류 확산도 기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수산식품은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해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반면 한국의 경쟁력이 큰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이번 EPA로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된다. 이로써 운송·물류 네트워크가 다각화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도 개방돼 조지아 내 한류 확산도 기대된다.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및 우리 디지털 제품을 자국 디지털 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됐는데, 특히 조지아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가 포함돼 우리 기업이 조지아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양허(관세 감면율) 수준이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에 이르는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 교역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조지아는 러·우 전쟁 이후 신흥 물류 요충지로 떠올라 EPA를 기반으로 발칸·코카서스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제적 영향 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 확대

### 한·방글라데시 EPA 공식 선언하고 TIPF도 체결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 개시로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8일 서울에서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아울러 양국 간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 대국(1억 7,000만 명)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서명한 TIPF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섬유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각화하고, 전자·디지털 등 방글라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韓·방글라데시 양국은 2025년 상반기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정 본부장은 모로코 투자로드쇼(Morocco Now)에 참석차 방한한 모로코 카림 지단(Karim ZIDANE) 투자 특임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 간 EPA 추진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철도, 전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참여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관련해 모로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모로코 지단 장관은 EPA 논의를 앞당기자고 화답하고, 모로코는 유럽연합(EU)·미국 등 55개국과의 풍부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유럽·중동 진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투자 허브로 자동차, 항공, 조선,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한국 기업의 진출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 한·호주 FTA 10년 ··· 한국, 호주의 3대 수입국 됐다

양국 무역 규모 연평균 5.7% 증가, 中 대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국 부상

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무역이 연평균 5.7% 증가하고 한국이 호주의 3대 수입국으로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11월28일 통상이슈브리프 ‘한·호주 FTA 10주년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韓·호주 무역규모는 FTA 발효 이후 연평균 5.7%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수출은 FTA 발효 전 대비 72.8% 증가(연평균 6.3%)하고, 수입은 발효 전 대비 60.8% 증가(연평균 5.4%)했다. 눈에 띄는 점은 호주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일본을 추월해 중국, 미국에 이어 3위가 됐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의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호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FTA 발효 전인 2014년 4.3%에서 2023년 6.4%로 2.1%p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석유제품과 수송기기, 對호주 수입은 천연가스, 유연탄 등 광물과 농림수산물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23년 對호주 경유, 휘발유, 제트유 및 등유와 같은 석유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57.6%를 차지했으며, 승용차·기타 자동차·철도차량·전기자동차 등 수송기기는 20.5%를 차지했다. 호주는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즉시 철폐했으며, 일부 품목은 5년 내 철폐한 바 있다. 가솔린 승용차, 디젤 자동차, 디젤 화물자동차 등 20개 품목의 수송기기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그밖에 수송기기 품목은 3년 내 철폐했다. 2022년 기준 호주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자동차 수입국이기도 하다.

호주는 철광석, 납, 니켈, 우라늄 등 세계 1위 보유국이자 흑탄, 코발트, 구리, 마그네사이트 등 주요 원자재 보유량 세계 5위에 속한다. 망간, 희토류, 아연, 니켈 등 세계 5대 생산국이기도 하다. 우리는 2030년까지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에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양국은 FTA 10주년 회의에서 광물자원, 에너지 관련 협력을 증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9월 열린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에서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및 자원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美·中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제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호주는 한국의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주요 협력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또한 11월 20일 열린 ‘한·호주 미래 협력 포럼’에서 “양국은 기존의 우호적 무역·투자 관계에 더해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통상 환경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 KOLAS, 탄소발자국 검증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우리 수출기업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크게 절감 기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5일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KOLAS는 올해 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현재 8개)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KTR, KTL, KTC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진중욱 기표원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 IAF MLA 체결 현황(온실가스 검증 분야) ●

EU(20개국 20개 인정기구)	오스트리아 <sup>(AA)</sup> , 이탈리아 <sup>(ACCREDIA)</sup> , 벨기에 <sup>(BELAC)</sup> , 체코 <sup>(CAI)</sup> , 프랑스 <sup>(COFRAC)</sup> , 독일 <sup>(DAKKS)</sup> , 덴마크 <sup>(DANAK)</sup> , 불가리아 <sup>(EA-BAS)</sup> , 스페인 <sup>(ENAC)</sup> , 그리스 <sup>(ESYD)</sup> , 핀란드 <sup>(FINAS)</sup> , 포르투갈 <sup>(IPAC)</sup> , 라트비아 <sup>(LATAK)</sup> , 헝가리 <sup>(NAH)</sup> , 폴란드 <sup>(PCA)</sup> , 루마니아 <sup>(RENAR)</sup> , 네덜란드 <sup>(RvA)</sup> , 슬로베니아 <sup>(SA)</sup> , 슬로바키아 <sup>(SNAS)</sup> , 스웨덴 <sup>(SWEDAC)</sup>
기타(16개국 18개 인정기구)	미국 <sup>(ANAB)</sup> , 중국 <sup>(CNAS, HKAS)</sup> , 일본 <sup>(JAB)</sup> , 캐나다 <sup>(SCC)</sup> , 한국 <sup>(KOLAS, NIER)</sup> , 영국 <sup>(UKAS)</sup> 등

## 지식재산과 무역금융이 만나 수출 날개 달다

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우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보유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유망 IP 보유 1,000개 기업에 2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K-SURE는 11월 27일 IP 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IP 기반 사업을 미래의 새로운 수출자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K-SURE는 수출 유망 우수 IP 보유 혁신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특허청은 IP 평가비용을 최대 90% 지원, 연간 3조 원 규모의 IP 금융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K-SURE는 수출 신용보증 1.5배 한도 우대 및 30% 보증료 할인,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제공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향후 5년간 약 1,000개 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출 규모가 39.6% 높게 나타나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K-SURE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재연장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추가로 2개월 연장된다. 또 서민의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와 LNG 할당관세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과 3개월로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ℓ, ▲경유 133원/ℓ,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47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편 동절기 서민 난방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 관세전쟁 코앞인데 韓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

### 한경협·PIIE, 트럼프 2기 대비 K-경제안보 전략 구축 제언

고율 관세를 이미 예고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초강력 관세 카드를 꺼냈다.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듯이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관세전쟁에 대비한 K-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타깃은 한국이 아닌 중국과 멕시코인 만큼 對美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1월 20일(취임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중국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모든 추가 관세보다 높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관세 적용 기간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마약과 불법이민 문제는 근절하기 쉽지 않다. 결국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약과 불법이민자 문제에 관세 카드를 꺼낸 트럼프의 행보를 두고 결국 경제는 물론 분야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가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스크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폭스뉴스에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의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지는 않으리라는 의견도 있다. 11월 26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가 공동으로 개최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컨퍼런스에서 아담 포젠 PIIE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이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은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포젠 PIIE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는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 2기 시대에는 한국이 對美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美·中 이외 시장으로 다각화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 주제의 세션 1에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 또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며, 韓·美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분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산업협력 아이টে를 제안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ASEAN 및 EU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rule-based trading system)’의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편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對美 수출은 최대 158억 달러(약 22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세션1의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의 對美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위산업,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관세에 대한 對美 수출 반응도(탄력성)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플라스틱·원자력은 관세장벽에도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對中 견제 때문에 한국 기업이 반도체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마틴 초르젤과 PI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및 기술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는 미국, 중국 관련 위험제거(디리스크)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에는 전략 옵션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 실장은 “美·中 전략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하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PIIIE 선임연구위원은 세션1 패널 토론에서 “트럼프 2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출·투자 병행체제’로의 구조전환 등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일부 산업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안보 :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 한국의 전략적 방향’ 주제로 열린 세션2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컬렌 헨드릭스 PI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분담(burden sharing)’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와 기업이 전례없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정부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방산, 조선 등 한국의 영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내각 구성이 끝나는데로 정부도 韓·美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 K-SURE·KIND,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손잡아

녹색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 강화, 유망 프로젝트 공동 발굴 등 협력 추진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외 녹색산업 수주 활성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K-SURE는 11월 27일 KIND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녹색 프로젝트 수주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시설대 등 해외 투자자금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해외 녹색산업 수주지원, ▲유망 프로젝트 공동 발굴 등이다.

특히 K-SURE가 금융지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KIND가 출자를 통해 연계해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SURE와 KIND는 2018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KIND가 투자하는 해외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K-SURE의 금융지원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SURE의 금융지원 역량과 KIND의 프로젝트 투자 역량이 합쳐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 녹색인프라 프로젝트는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의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환경부 예산 3,000억 원 및 민간 매칭자금 1,000억 원을 통한 총 4,000억 원 규모 펀드다.

한편, K-SURE는 우리 기업의 해외 녹색산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앙골라 재무부 등 각국 정부 부처 및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MIGA는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장영진 K-SURE 사장은 “해외 녹색산업 규모가 나날이 커지며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KIND를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확대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 식약처, PIC/S 재평가 완료 ··· 국제적 GMP 관리 역량 재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1월 25일 전했다.

로엘 옴 덴 캄프 평가위원장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55차 PIC/S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매우 성공적이었고, 모든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PIC/S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국제 규제 조화 및 실태조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국산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다. PIC/S 가입은 국내 의약품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뿐 아니라 의약품 수출 시 GMP 실사 일부 면제 및 신속한 정보 취득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PIC/S 회원국 재평가는 회원국이 의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식약처는 2014년 7월 가입 후 올해 첫 재평가를 치렀으며, 이번에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중국(NMPA) 등 PIC/S 신규 가입국 검토를 위한 평가단으로 위촉됐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가 PIC/S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한국 의약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GMP 관리 체계와 의약품 규제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며, “PIC/S 재평가에 발맞춰 산업계는 한층 강화된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설비 투자와 인력 보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식약처·관세청 해외 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집중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11. 29.)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성 협업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서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96종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관련 원료 성분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김성은 기자 |

## 해외 직구 전기레인지, 발 보온기 등 45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겨울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58개 인기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차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조사한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겨울용품 중 판매량이 많은 258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부적합률은 17%로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10월까지 국내 부적합률 5.8%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은 85개 제품 중 전기레인지(3개), 발 보온기(3개), 전기방석(2개), 직류전원장치(11개), 전지(2개) 등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4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5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1개) 등 6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어린이제품은 133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유아용 섬유제품(5개), 완구(4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http://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http://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45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했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기표원은 해외 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해외 직구 위해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정부, KOTRA와 서비스 기업 수출체력 강화 나선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월 5일부터 2일간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요 서비스 분야인 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3개 업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 과정에서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며,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정부의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한 사전신청은 지원단 홈페이지([www.export119.go.kr](http://www.export119.go.kr))에서 12월 2일까지 접수하며,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신청 시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미리 받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한다.

지원단 김동준 부단장은 “미국 新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핵심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비스 분야별 협단체와 협의해 기업이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반도체 소·부·장 업계 오랜 숙원, 드디어 사업화

### 반도체 양산팍과 동일한 환경서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성능평가 길 열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 글로벌 반도체 칩제조 기업과 연계한 첨단반도체 테스트 베드-트리니티 팍’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8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팍 기반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니팍은 정부, SK하이닉스, 지자체(경기도, 용인시)가 투자해 약 1조 원 규모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2031년까지 구축되며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반도체 테스트 베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 칩제조,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 상생과 혁신을 통해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미니팍을 ‘트리니티 팍’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트리니티 팍은 반도체 양산팍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며 첨단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개발제품의 성능·검증 평가 및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전문 엔지니어의 컨설팅이 상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발된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운 장비 기업을 비롯해 자체 클린룸 구축·관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도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기반의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 및 산·학·연 반도체 현장형 전문 인재양성 등도 추진된다.

기 구축된 공공팍과도 연계해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특성평가부터 양산 진입을 위한 성능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연계된 상생과 혁신의 모델 트리니티 팍을 플래그십으로 삼아 향후 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 이전가격 사후보장조정 관세평가 처리원칙 논의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 사후보장조정의 실마리를 찾고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28일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은 2024년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며,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은 2024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의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뤄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납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로열티 지급내역 등 과세자료 확보와 상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앙관세분석소, WCO 회원 4개국 대상 관세 분석기법 전수

중앙관세분석소는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네팔, 몽골, 우간다, 튀니지)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했다고 전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18년 WCO 지역관세분석소(RCL, Regional Customs Laboratory)로 지정된 후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연 1회 운영 중이다.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했으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업무에 대한 능력 배양과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을 제공했다.

특히 튀니지의 경우 현재 관세 분석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맞춰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제공했다.

박재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분석 업무 발전과 관세분석소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WCO 지역관세분석소로서 선진 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 관세청과 법정부 협력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자 관세청이 관련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했다.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같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관련 정보 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중기부, 트럼프 2기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11월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담팀(TF)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수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글로벌 원팀협업체 등도 망라해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출입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新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 영향을 점검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kr 도메인 등록 기업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규 3단계 kr 도메인을 생성함에 따라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상표권자 우선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해외 국가 도메인인 ‘.ai(앵귤라)’, ‘.io(영국령 인도양 지역)’, ‘.me(몬테네그로)’가 AI 분야, 스타트업, IT 기업, 블로거들 사이에서 활발히 사용됨에 따라 현 트렌드를 반영한 3단계 kr 도메인을 생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 생성된 도메인은 ‘.ai.kr’, ‘.io.kr’, ‘.it.kr’, ‘.me.kr’이다. 특히 ‘.ai’ 도메인 등록 비용이 1년에 10만원 내외인 것에 비해 ‘.ai.kr’은 1년에 2만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다. 국내 상표권자는 상표명과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도메인 별로 1개씩(총 4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mic.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판매자가 최종 송품장을 발행한 경우(수입국 발행 송품장)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중 FTA
질문	국내 구매자 A는 국내 판매자 B로부터 중국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상업송장은 B가 발행) FTA 원산지증명서(CO) 제5란에 B의 명칭을 기재해야 할까요?
답변	수입당사국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비당사국 송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원산지증명서

####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는 특혜관세 부과를 위해 활용된다.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거나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서로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증서류인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할 것이다. 결국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진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원산지증명제도는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④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을 기관발급 체계에 의한 원산지증명, ②부터 ④까지를 자율발급 체계에 의한 원산지증명이라고 한다.

##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방식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 한·중 FTA 부속서 3-다에 통일서식으로 규정돼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한·중 FTA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 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우리나라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말하고, 중국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를 말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통일서식으로서 해당 양식에 의해서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CCPIT에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없다. 조심 2022관0114(2022. 10. 18.)에서는 수입신고 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취)된 건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발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돼야 하며, 한·중 FTA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부속서 3-다(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돼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제1번란(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국가)부터 제14번란(Certification, 증명)까지 작성한다. 원산지증명서의 Overleaf Instruction(뒤쪽 설명)에는 제1번란부터 제14번란까지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도 이를 반영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생산자, 수하인의 정보뿐 아니라 운송 수단 및 경로, 물품명세(품명, 수량, 총중량, 원산지기준, HS CODE 등)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해당 란의 작성은 필수인 경우도 있고 선택인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품명세에 관해 작성하는 제6번란부터 제12번란까지의 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다만, 생산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제2번란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면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제4번란의 운송 수단 및 경로(Means of transport and route) 또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데, 그 이유는 “as far as known(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월 중국 상해세관에서 환적(포항 → 부산)으로 인한 선명 불일치를 이유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4란(운송수단 및 경로)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을 안내한 사례가 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의 하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제3국 송장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됐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며,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 (3) 제3국 송장에 의한 원산지증명

한·중 FTA 특혜관세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출자(수입자)와 중국의 수입자(수출자) 간 거래에 적용된다. 즉 FTA는 협정체결국 간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제도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협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소유권의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며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중계무역). 중계무역의 경우 2장 이상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가 발행될 수 있고 이를 제3국(비당사국) 송장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예 : 홍콩에 소재한 수출자)가 중간에 개입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한·중 FTA도 제3국(비당사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F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 제3.22조(비당사국 송장)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이 장(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따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는 협정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3국 송장이 발급됐을 때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국 송장에 대한 발행정보가 무조건 기재돼야 하는지가 문제다. 대표적으

로 한·ASEAN FTA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 건임을 체크하고 관련 사항(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을 기재해야 한다.

한·중 FTA도 한·ASEAN FTA와 마찬가지로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관련 사항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한·중 FTA에서 비당사국 송장 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정보(회사명, 국가 등)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은 “한·중 FTA 제3.21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당사국 송장 거래이지만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회사의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국내 구매자 A는 국내 판매자 B로부터 중국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상업송장은 B가 발행) FTA CO 제5란에 B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중 FTA의 경우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사항만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B가 A에게 발행하는 상업송장이 제3국(비당사국) 송장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5번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당사국 및 영역에 대한 해석

한·중 FTA의 서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을 양 당사국(the Parties)”이라고 해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비 당사국(Non-Party)’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의 제1.5조(영역적 적용)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한·중 FTA는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고, “한국에 대하여, 한·중 FTA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및 한국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당사자들은 비당사국에 소재한 비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해당 비당사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이 제3.22조의 비당사국 송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3) 질문 & 답변에 대한 해석

질문은 국내 구매자 A가 국내 판매자 B로부터 중국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B에 대한 정보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다. 해당 내용이 B가 직접 수입한 뒤 A에게 납품을 하는지 아니면 수입통관 전에 B가 A에게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양도 등을 통해 A에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도하고 A가 수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추정하건데, 후자로서 B가 A에게 B/L 양도 등을 하고 A가 수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B가 발행한 송장이 제3국 송장인지, 제3국 송장이라면 제5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B는 한국과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B가 발행한 송장은 비당사국 송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B가 소재한 영역은 한국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사국(한국)에 소재한 상업송장은 비당사국(제3국) 송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수입당사국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비당사국 송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한·ASEAN FTA에 대한 해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생산자/수출자는 베트남이고 한국 업체 A社가 중간에 개입해 최종 수입자인 한국 업체 B社에 송품장을 발행한 사례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수입당사국 내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상의 제13번란 제3국 송장 항목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로 한·ASEAN FTA 협정 제1조에 따라 ‘제3국(third country)’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의미하므로, 수입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2란에는 송장번호 및 일자(Number and date of invoice)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해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제12번란에 명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해석하면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2번란(송장번호 및 날짜)에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당사국 송장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당사국에서 발급된 송장번호 및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B가 발행한 송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의 수출자가 B에게 발행한 상업송장의 번호 및 일자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국에서의 추가적인 양수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제3국 송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간단하게 제3국 송장에 관한 사안을 원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거래 또는 추가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B/L 양수도 계약이 있더라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국내 B/L 양수도 거래가 이뤄진 건에 대해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단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수입자 상호는 해당 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입된 수입자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서는 2. 수입자(상호, 성명, 주소 등)에 대한 작성에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서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하되 그 외의 항목은 물품 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관련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는 양수도 거래에서 세관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FTA 특혜관세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관의 검토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외의 내용은 물품 양수도가 이뤄진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만으로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수도 거래에서 FT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하는 것이다.

물품이 수출된 후 수입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의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서 무조건 제3국 송장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정의하는 당사자 및 영역적 관점에서 비당사국에서 비당사자에 의해 발행된 송장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해야 한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숟가락·젓가락의 HS Code**

**스테인리스 재질의 숟가락·젓가락 세트의 HS Code는 어떻게 되나요?**

제82류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215호에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을, 제8215.20호에는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에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에 해당된다면 제8215.20-0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 재수입 시 과세가격**

**수출물품이 불량으로 판정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신고 당시 단가 그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불량이 발생해 재수입하는 경우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품질 불량인 물품을 당초 수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관세법」 제 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4방법(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2 ~ 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감면 / 재수입면세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기를 재수입할 때 수출자와 재수입 시  
 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요?  
 또 포장용기에 시리얼 넘버가 꼭 표기돼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법」 제99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임이 수출신고 필증 등에 의해 입증·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해도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신고 시 시리얼 넘버 등을 기재해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리얼 넘버가 없는 포장용기의 경우 수출입 거래 내용, 포장용기의 재고 관리 현황 등의 자료를 통해 통관지 세관에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중략> ...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HS 해설서를 통해 호 용어의 의미를 판단한 품목분류 판례해설

김희정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 1. 들어가며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 및 그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표를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정해진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HS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자료로서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 두 지침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HS 해설서 문언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특정 호의 용어에 대해 HS 해설서가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통해 해당 호의 용어가 지니는 의미를 판단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크릴 폴리머 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제 3707.90-1010호(사진용 화학 조제품)으로 수입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제3208.20-1030호(제32류의 주 제4호의 용액)으로 품목분류해 원고에게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208.20-1030호로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수입신고할 때와 세율 차이에 따른 차액의 관세 등을 납부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진용 화학 조제품에 해당해 제3707.90-9900호로 분류돼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면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ernish), 글루(glue), 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은 품목번호 제3707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에서도 제3707호는 “사진 상(photographic images)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은 사진 상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하는 화학약품이므로 제3707호로 분류돼야 한다.

#### 나. 판단

##### 1) 인정사실

가)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① 웨이퍼(wafer) 제조, ② 산화 공정(웨이퍼에 산소를 주입해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과정), ③ 포토 공정(설계 도면을 웨이퍼에 구현하는 과정으로 감광액 도포, 노광, 현상의 세부 공정으로 다시 나뉨), ④ 식각 공정(반도체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 ⑤ 증착 공정(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박막을 만드는 과정), ⑥ 금속 배선 공정(웨이퍼에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과정), ⑦ EDS 공정(성능평가 과정), ⑧ 패키징으로 구분된다.

나) 위 반도체 제조 공정 중 ③ 포토 공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감광성 고분자 물질인 감광액(Photoresist, 이하 ‘PR’)을 고르게 도포한 후, 노광(Exposure)장비인 스텝퍼(Stepper)를 사용해 웨이퍼에 새겨질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찍어낸 다음, 현상액을 뿌려 노광된 영역과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식각 공정이 진행돼야 할 부분에 존재하는 PR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 위와 같은 포토 공정에서는 회로 패턴을 보다 미세하게 형성시키기 위해 렌즈와 감광액이 도포된 PR 사이의 빛이 통과하는 공간에 굴절률이 낮은 공기 대신에 초순수와 같은 고굴절률 매질을 충전하는 액침노광 공정이 실시되는데, 이 사건 물품은 아크릴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 용매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으로서 액침노광 방식의 초미세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다.

라) 액침노광 공정 시 초순수를 매질로 사용할 경우, PR과 초순수가 접촉해 PR 내의 감광제나 첨가제 성분 중 일부가 초순수로 용출됨에 따라 초순수가 오염, PR 손상, 오염된 초순수로 인한 렌즈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 사건 물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PR 위에 도포됨으로써 PR과 초순수 간의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노광 중에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굴절된 빛을 유도하는 역할을 일부 한다.

마) 대한민국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관세 등에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수용해 적용하고 있다. HS협약 제3조에 따라 체약국은 6단위 부호(소호)까지는 자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를 HS협약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한민국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6단위 부호(소호)까지를 HS협약에 따라 편성하고 있고, 다만 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하위분류 4단위 부호를 추가해 총 10단위 부호로 세분한 HSK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WCO가 승인한 HS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인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과 [별표 2]로 수용해 왔다.

바) HSK의 제3707.90-9900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품명
호	소호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e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99 00	기타

사) HSK의 제3208.20-1030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품명
호	소호	
3208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10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해설서(이하 ‘해설서’)는 제3707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호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 상(photographic image)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유제(emulsion)(이 류 총설 참조)
- (2) 현상제(現像劑 : developer) : 잠재된 사진 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예 : 히드로퀴논·카테콜·피로갈롬·페니돈·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와 이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electrostatic) 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 (3) 정착제(fixer) :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 것(예 :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메타 중아황산나트륨·티오황산 암모늄·암모늄·나트륨·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 (4) 증도제(intensifier)와 감도제(reducer) :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 증크로뮴산칼륨·염화제이수은·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 (5) 조색제(toner)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 황산나트륨)
  - (6) 세정제(clearing agent) : 현상·정착 등의 처리과정 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 칼륨명반)
-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마그네슘의 가루·태블릿(tablet) 모양·박(箔 : foil)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그 밖의 물질과 혼합될 때도 있다.

위의 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단일물질의 것

- (i)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 태블릿(tablet) 모양이거나 가루 모양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 (ii)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과 레이블·문헌이나 그 밖의 방법(예 :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위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 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28류나 제29류에 열거된 화학물품·제15부에 해당하는 금속 가루 등).

(B) 두 가지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하거나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벌크(bulk)이거나 소량이든 이 호에 분류한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재료[예 : 사진첩부용 접착제·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vernish)·수정용 페인트·연필 등]
- (b)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전구(flashbulb)
- (c)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예 : 귀금속의 염(salt)과 그 밖의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하였고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다).

자) 한편, 관세율표 제32류의 주 제4호는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해설서는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제3208호 해설서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

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반응 억제제·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溶劑)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한다.

## 2) 관련 법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이 부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해야 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춰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검토해보면, 이 사건 물품은 HSK 제3208.20-103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물품은 아크릴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으로, 구성 성분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바, 이 사건 물품은 제32류의 주 제4호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HSK 제3208호에 포함되고, HSK 제3208.20-1030호의 규정에 부합한다.

나)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이 제37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품이 사진 상(photographic image)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돼야 하는 바, 그 예시로 유제, 현상제, 정착제, 증도제와 감도제, 조색제, 세정제가 규정돼 있는 점, 위와 같이 예시로 규정된 화학약품은 빛이나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잠상 내지 가시상을 형성하고,

형성된 가시상을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 HS 해설서는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재료는 제3707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보조재료의 예시로 “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vernish)”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진 상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란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화학반응을 통해 잠상 내지 가시상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액침노광 방식에서 PR의 수용성 부분이 용해돼 투영렌즈에 접촉하는 초순수를 오염시켜 투영 렌즈에 부식 등의 영향을 미치고, 웨이퍼 위에 도포된 PR에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물품으로, PR 위에 도포돼 PR과 초순수 간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이고, 포토 공정 중 현상 단계에서 PR로부터 박리돼 제거될 뿐이다. 이 사건 물품의 개발 목적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물품이 다른 물질과 어떠한 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사진 상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제370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단순히 PR 위에 도포돼 PR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분해능(근접한 두 개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웨이퍼 위의 반도체 회로를 좀 더 선명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액침노광 공정에서 분해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굴절률 매질은 초순수인 점, PR 위에 도포해 막을 형성함으로써 PR과 초순수의 상호작용을 차단해 초순수의 오염을 막는 것이 이 사건 물품의 주된 용도인 점, 제조사의 이 사건 물품 설명자료나 이 사건 물품의 특허의 내용에도 분해능 개선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사용에 따른 분해능 향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적극적으로 액침노광 공정에서 해상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기보다는 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이 사건 물품에 일정한 굴절률이 요구되는 이유는 표면코팅제인 이 사건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굴절률의 저하 방지 또는 과도한 굴절률로 인한 초점 형성 실패 방지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최소한 반도체 회로패턴을 현상하는 과정에서 표면 결함(흙)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3707.90-9300호로 분류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세정제는 포토 공정 후 발생한 PR 찌꺼기, 식각공정 시 제거되지 않은 산화막 등 웨이퍼 표면의 잔류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통해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반해,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PR에 도포돼 PR과 초순수 간 상호작용을 차단해 초순수의 화학적 오염을 막음으로써, 오염된 초순수에 의한 렌즈 등의 손상 및 그로 인한 반도체 회로의 결함(흙)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해당 공정 이후 오히려 세정제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미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얼룩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4. 결어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해설서의 문언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구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특히 이 사건은 호의 용어에 대해 HS 해설서가 예시하고 있는 품목들을 통해 해당 호의 용어가 지니는 의미를 판단함으로써 HS 해설서가 품목분류 적용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제8404호[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 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 [ 해설 요지 ]

제8404호는 크게 (A)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B)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A) 소그룹에는 본체(제8402호, 제8403호)와 연소장치(제8416호 등)를 제외한 부속장치의 일부를 이 호로 분류한다.

(A)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Auxiliary plant) 소그룹에는 ① 과열기, ② 절탄기, ③ 공기에열기와 같은 열효율 등을 높이기 위한 설비와 ④ 과열저감기와 같은 안전장치, ⑤ 증기콜렉터·증기비축기·열비축기와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 ⑥ 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슬러지제거기 등과 같은 연소 후 처리장치 등이 포함된다.

(B)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소그룹의 기기는 증기(기체)를 냉각해 열을 빼앗아서 응축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여기에는 ① 표면 응축기, ② 공기냉각식 응축기, ③ 혼합 응축기, ④ 복수기 등이 포함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과열기, 재열기, 절탄기, 공기에열기, 과열저감기, 수관식 노벽, 복수기, 표면응축기, 공기식 응축기, 혼합응축기 등이 있다.

### [ 주요 쟁점사항 ]

제8404호에서 제외되는 부속품과 부속기기는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제85류 주 제1호와 제16부 주 제2호의 제정 취지에 따라 이들 기기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특정 호로 우선 분류한다. 다만 이들 부속기기와 부속품이 보일러와 함께 제시해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 구조로 돼 있거나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돼 있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분류규정)나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해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로 분류한다.

제8404호의 부속기기(Auxiliary plant)와 제16부 총설에 해설하고 있는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는 모두 국문에 ‘부속기기’로 번역돼 있다. 그러나 제8404호의 용어는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 <후략>’로 이를 ‘보일러용 부속기기’로 번역하기보다는

‘보일러와 같이 사용되는 보조설비’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제8404호의 용어와 해설서에 열교환 방식을 이용한 ① 과열기(super heater), ② 연료절약기(economiser), ③ 공기에열기(air pre-heater), ④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등이 예시 물품으로 규정돼 있고, 제8419호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를 규정하고 있고, ‘(A) 여러 가지의 가열·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과 ‘(B) 열교환장치’를 예시하고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한 분류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해 제8404호의 용어에 물품명으로 열거한 ‘연료절약기·과열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가 제8419호의 용어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제8404호로 분류한다.

## I. 분류 체계

### ■ 호의 구성

제8404호는 크게 (A)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B)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보일러는 크게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로 구성되며 이를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라고도 한다. 제8404호에는 본체(제8402호, 제8403호)와 연소장치(제8416호 등)를 제외한 부속장치의 일부를 이 호로 분류한다.

(A)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Auxiliary plant) 소그룹에는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제85류 주 제1호와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특정한 호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과열기(super-heater)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화증기를 재가열해 포화 증기 속에 함유된 수분을 증발시키고 고온의 과열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과열기는 과열기관(管)과 헤더로 구성되며 보일러에 직접 부속해 그 화로 또는 연도에 배치되는 간접 연소식을 원칙으로 한다. 과열기는 전열 방식(배치 위치)에 따라 ① 복사형 과열기, ② 대류형 과열기, ③ 복사 대류형 과열기의 3형식으로 분류되고,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를 과열하는 1차 과열기, 1차 과열기에서 나온 과열 증기를 과열하는 2차 과열기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부속장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열을 회수해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참고로 과열기와 같은 동일한 구조의 재열기(reheater)는 증기 터빈에서 팽창한 포화 온도에 가까운 상태의 증기를 뽑아내어 다시 가열(재열)해 소정의 과열 증기, 즉 소위 재열 증기로 만드는 장치다.

(2) 절탄기는 연료절약기 또는 이코노마이저(economiser)라고도 한다. 보일러 전열면을 가열하고 난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가스에 의해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로 이 부속장치

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열 이용률의 증가로 인한 연료 소비량의 감소, 증발량의 증가, 보일러 몸체에 일어나는 열응력의 경감, 스케일의 감소 등이 있다. 과열기 다음에 설치해 연도 가스의 여열(waste heat)이나 어떠한 기계 형태에서는 배출증기의 여열을 이용해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한다.

(3) 공기예열기(air pre-heater)는 과열기와 절탄기(이코노마이저)와 같이 연도 가스의 여열을 이용해 연소용 공기의 예열(예비 가열)을 하는 장치(열교환기)다. 공기를 예열하면 ① 연소 온도가 높아져 전열 효과가 커지며, ② 과잉 공기량이 적어 완전 연소하기 쉽고 연소 효율이 높아져 연료가 절감되고, ③ 배기가스 열손실이 경감해 보일러 효율이 향상되며, ④ 수분이 많은 저급 연료의 연소에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기 예열기는 전열 방식으로 분류하면 전도식 공기 예열기와 재생식 공기 예열기로 대별된다. 전도식 공기 예열기는 다시 그 구조에 따라 관형 공기 예열기와 판형 공기 예열기로 나뉜다.

(4) 과열저감기(de-super-heater, attemperator)는 과열기에서 과열온도가 특정 소요의 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보통 두 개의 과열기 중간에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과열된 증기가 통과하면서 물의 흐름에 의해 냉각되는 주철(cast iron)로 만든 용기로 구성돼 있다. 과열저감기는 과열 증기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따라 표면 냉각식 과열저감기와 분무식 과열저감기로 나뉜다.

(5) 증기컬렉터(steam collector)는 여러 개의 보일러로부터 발생한 증기를 수집하기 위한 원통형의 용기다.

(6) 증기비축기(steam accumulator)는 잉여 증기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 원통형의 고압 단열 용기다.

(7) 열비축기(thermic or heat accumulator)는 증기발생보일러로부터 나오는 여열을 비축한다.

(8) 수관식 노벽(tubular furnace-wall)은 보일러의 급수가 순환하는 도관에 접속되는 수직식 수관(watertube) 장치로서 노(furnace) 벽의 내면 앞에 설비하도록 제작돼 노벽의 과열방지와 급수예열(pre-heating)을 위한 장치다.

(9) 그을음제거기(soot remover, soot blower)는 증기발생장치의 관(管) 모양 부분품에 쌓인 그을음과 그 밖의 유사한 퇴적물을 증기나 압축 공기를 분사해 제거하는 장치다. 구조상 회전식과 리트랙터블식(retractable type)으로 대별된다. 용도에 따라 디슬래거(deslagger), 건 타입(gun type) 그을음 블로워, 에어 히터 클리너 등이 있다.

(10) 가스회수기(gas recoverer)는 대기오염 방지와 연료 절감을 위해 불연소된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 배기가스를 노(furnace) 내에 되돌려 보내는 장치다.

(11) 슬러지 제거기(sludge scraper)는 노 내에 쌓인 연소된 재와 그 밖의 퇴적물 등을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다.

(B)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소그룹의 기기는 증기(기체)를 냉각해 열을 빼앗아서 응축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보일러 관련 설비에서는 수증기를 응축(복수)시키는 장치를 복수기라고 한다. 응축기의 기능은 배출 증기의 냉각과 응축에 의해 증기원동기 내의 배압을 저하시키고 또한 증기원동기의 출력을 증가시킨다. 이 소그룹에는 다음의 기기들이 포함된다.

(1) 표면응축기(surface-condenser)는 관(管) 시스템을 에워싼 원통형 외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수가 관을 통해 순환함으로써 실린더(cylinder) 내로 도입된 증기를 응축한다.

(2) 공기냉각식 응축기(air-cooled condenser)는 공기의 강제통풍에 의해 냉각되는 방열판이 붙은 증기 관(管)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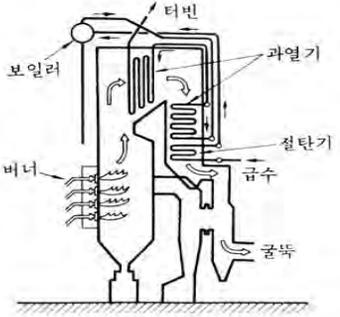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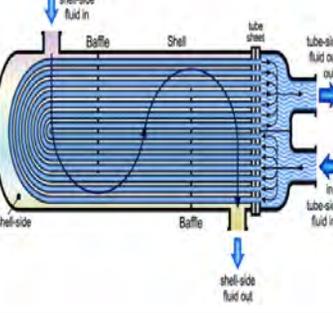
(3) 혼합응축기(mixing condenser)는 증기와 물이 직접 혼합된다. 여기에는 이젝터 펌프(ejector pump) 내의 분사와 같은 원리의 작용을 하는 물의 분사에 의해 응축기실 내에 부분적 진공을 형성하는 이젝터 응축기를 포함한다.

(4) 복수기는 응축기의 일종으로 밀폐된 용기로 돼 있으며, 공급되는 냉각수에 의해 흘러들어 오는 증기의 증발열을 빼앗아 증기를 물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한다. 증기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는 혼합복수기와 전열면을 통해서 열 교환을 하게 하는 표면복수기가 있다. 왕복형 증기 기관이나 증기터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복수기의 목적은 증기를 물로 환원시킴으로써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내리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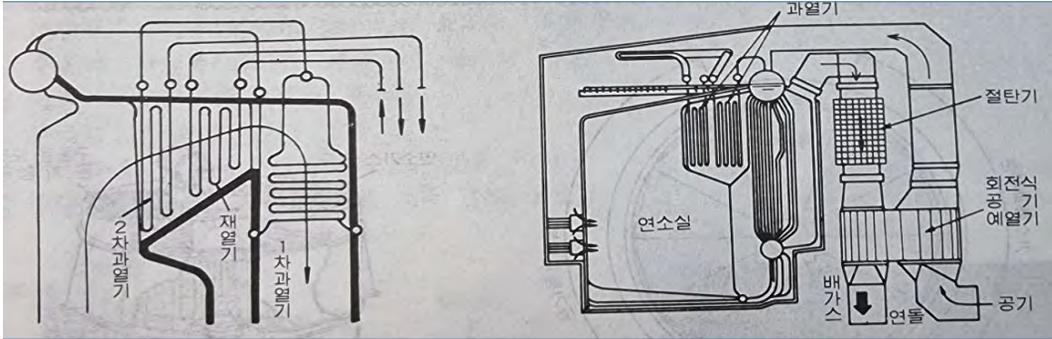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과열기, 재열기, 절탄기, 공기에열기, 과열저감기, 수관식 노벽, 복수기, 표면응축기, 공기냉각식 응축기, 혼합응축기 등이 있다.

■ 제8404호의 다양한 기기

과열기(super-heater)	재열기(re-heater)	절탄기(economiser)
		

과열기와 절탄기의 배치도	재생식 공기예열기	과열저감기(de-super-heater)
		
과열저감기 설비	증기비축기	열비축기
		
수관식 노벽(과열방지, 급수에열)	그을음제거기	응축기 구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공기 냉각식 응축기	혼합식 응축기
		

보일러와 부속기기 배치도



■ 제8404 소호의 구성

제8404호는 호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①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② 증기원동기용 응축기를 특정 소호로 규정하고 ③ 이들 기기의 부분품을 소호에 규정한 총 3개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04.10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 제8404.2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제8404.90 - 부분품

■ 제8404호 HSK의 구성

HSK는 제8404.10 소호의 경우 호의 용어에 규정한 물품(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을 특정 HSK로 세분화했고 제8404.90 부분품 소호는 협정세율을 반영하기 위해 ①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②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으로 세분화했다.

II. 관련 규정

제8404호의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 제16부 주 제4호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 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 제16부 주 제5호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 ■ 제84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 제17부 표제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제7311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 제8402호의 용어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 제8419호의 용어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 … <후략>

### ■ 제8424호의 용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III. 주요 쟁점사항

제8404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04호에서 제외되는 부속품과 부속기기는?
- 2) 제8404호의 부속기기(Auxiliary plant)와 제16부 총설에 해설하고 있는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와의 차이점은?
- 3) 제8404호와 제8419호의 경합 시 제8404호로 분류하는 이유는?
- 4) 제8404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 1) 제8404호에서 제외되는 부속품과 부속기기는?

부속기기란 보일러 본체 외에 증기(온수) 발생 장치 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부설되는 각종 장치로 보일러의 부속 설비로는 과열기, 이코노마이저(절탄기), 공기 예열기, 연소 장치, 통풍 장치, 급수 장치, 수처리 장치, 자동 제어 장치, 집진 장치, 재처리 장치 등이 있다. 또한 부속품(mountings and fittings)은 보일러 본체 외에 별도로 부착돼 각각의 기능 발휘에 소요되는 부품류로 보일러의 부속품으로는 안전밸브, 수면계, 드럼 내부의 기수 분리기, 각종 밸브나 콕류, 각종 계기류 등이 있다.

이들 부속품이나 부속기기가 모두 제8404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호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제85류 주 제1호와 제16부 주 제1호나 제16부 주 제2호의 제정 취지에 따라 이들 기기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특정한 호로 우선 분류한다(예 : 자동제어 장치는 제9032호, 밸브류는 제8481호, 연소장치는 제8416호, 통풍장치는 제8414호, 압력계와 열측정계는 제9026호).

다만 이들 부속기기와 부속품이 보일러와 함께 제시해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 구조로 돼 있거나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돼 있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분류규정)나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해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로 분류한다.

참고로 제16부 주 제2호 규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① 다른 부(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② 그 다음에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특정한 호이므로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③ ① ~ ②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나 집단 부분품 호로 분류하라는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제8404호 ‘보일러용 부속기기’는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이 적용되는 특정한 호에 해당한다. 반면 이들 기기의 부분품(예 : 과열기 관의 조립품)은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한 부분품의 분류사례 ●

시행일자	2016년 9월 29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4.90-2000호
품명	Support Plate For Condenser

○ 물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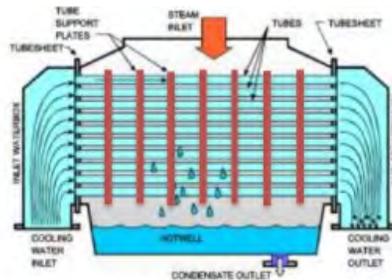
발전소의 증기터빈에서 배출되는 증기를 냉각하는 응축기 내부에 조립되는 Support Plate로서, 응축기 내부에 세로로 조립되어 냉각수가 흐르는 튜브들을 고정·지지해 줌.

두께 1.5cm, 가로 565.6cm, 세로 343cm인 사각형상의 철강(SA516 70) 제품으로 내부에는 튜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홀 가공돼 있음.

\* 주문 제작이므로 주문자 요구에 따라 규격 상이

○ 물품 사진

물품 설명



본 품은 ‘증기 터빈용 응축기’와 내부에 부착되어 냉각수가 흐르는 튜브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사각형상의 철강제품으로,

응축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며, 본 품이 없으면 냉각수 튜브가 고정되지 않아 냉각수가 제대로 흐를 수 없어 배출된 증기를 냉각할 수 없으므로 ‘응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제85류 주 제1호 규정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중략>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결정 사유**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04.20호에는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가, 제8404.90-2000호에는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의 해설서(B) 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에서 “배출증기의 냉각 및 응축에 의하여 증기원동기내의 배압을 저하시키고 또한 증기원동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는 여러 가지 형태의 증기응축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호에 해당하지 않고, 증기원동기인 증기터빈 용의 '응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가 속하는 제8404호에 분류해야 함.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04.90-2000호에 분류함.

### 2) 제8404호의 부속기기(Auxiliary plant)와 제16부 총설에 해설하고 있는 (III) 부속기기 (Accessory apparatus)와의 차이점은?

제8404호의 용어는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 <후략>'이다. 이를 '보일러용 부속기기'로 번역했으나 '보일러와 같이 사용되는 보조설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16부 주 제5호에서 "제16부의 주에서 '기계(machine)'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plant)·장비·장치(apparatus)·기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4류와 제85류에 열거된 모든 제품을 '기계(machine)'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Auxiliary'와 'Accessory'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고 '설비(plant)'와 '장치(apparatus)' 역시 조금은 차이가 있다.

제16부 총설에서 Accessory apparatus로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 컨트롤패널(control panel), 자동조절기"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 기기들은 특정한 기계에 종속되는 부수적인 기기로 판단된다.

Auxiliary plant 역시 보일러와 일체 구조로 돼 있거나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돼 있는 경우에는 종속되는 기기로 봐 보일러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Accessory apparatus와 차이가 없어 보이나 'apparatus or appliance'보다는 좀 더 커다란 'plant'라는 점에서 단일 기기가 아닌 단일기기들이 모인 설비의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제8404호의 용어를 '보일러와 같이 사용되는 보조설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3) 제8404호와 제8419호의 경합 시 제8404호로 분류하는 이유는?

제8404호에는 열교환 방식을 이용한 ① 과열기(super heater), ② 연료절약기(economiser), ③ 공기에열기(air pre-heater), ④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등을 호의 용어와 해설서에 예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8419호의 용어에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A) 여러 가지의 가열, 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과 ‘(B) 열교환장치’를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8404호와 제8419호는 분류의 경합이 발생하나 제84류 주 제2호 가목(제8419호의 범주) 등에 제8404호와 제8419호가 경합 시에 어느 호가 우선 분류 검토 대상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을 적용해 구체적으로는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해설에 근거해 제8404호의 용어에 물품명으로 열거한 ‘연료절약기·과열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가 제8419호의 용어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제8404호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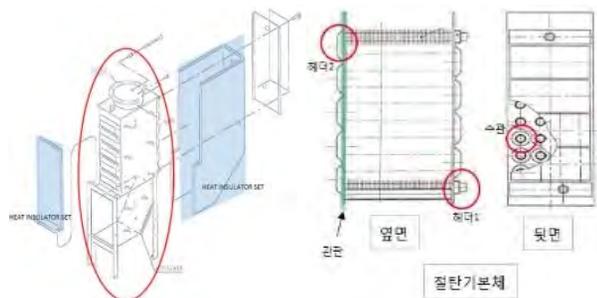
● 호의 용어에 물품명으로 규정한 ‘이코노마이저’의 제8404호 분류 사례 ●

시행 일자	2017년 6월 30일
시행 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4.10-1000호
품명	Economisers

- 단열재, 수관, 헤더, 관판 등으로 구성된 연료절약기로서, 본 품 내부에 구성된 수십 개의 수관이 대기로 방출되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해 열교환을 통해 보일러에 공급되는 물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로서, 버려지는 배기열로 급수를 데우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해 증기를 만들 수 있는 보일러용 부속기기  
규격 : 575 × 369 × 1,600mm

- 물품 사진

물품 설명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제 8402호)와 이들의 부속기기(제8404호)”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8402호에는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보일러는 그 출력이나 효율을 증대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범한 부속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제8404호에 해당하는 연료절약기(economiser) … <중략> … 등이 포함한다. 이러한 부속기기는 보일러와 함께 제시되어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구조로 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보일러에 분류되고,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정 사유**

제8404호에는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 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가 분류되고, HSK 제8404.10-1000호에는 ‘연료절약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연료절약기(economisers) : 연도(煙道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스의 여열(餘熱 : waste heat)이나 어떠한 기계 형태에서는 배출증기의 여열(餘熱)을 이용하여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이다. 연료절약기는 일반적으로 방열판이 붙은(gilled) 주철관이나 강관을 배열하여 결합시킨 헤더(headers)(관받침)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때로는 금속판으로 만든 체임버(chamber) 안에 넣고 연도가스나 배출증기가 통과되도록 되어 있다. 혼합형 연료절약기 안에서 여분의 수증기가 급수가 담긴 체임버 속에서 직접 통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버려지는 배기열과 열교환을 통해 연료를 절약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일러용 부속기기인 연료절약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404.10-1000호로 분류함.

**4) 제8404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기차와 선박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증기보일러라 하더라도 제17부에서 제외해 제8402호의 증기발생보일러로 분류한다. 동일한 이유로 보일러와 같이 사용되는 보조설비는 제8404호로 분류한다.

제7311호의 용어에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용기에는 밸브(valve)·탭(tap)·압력계·액면계 등의 조정용·제어용이나 측정용의 장치가 붙은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제8404호 해설서에 ① 물의 흐름에 의하여 냉각되는 주철(cast iron)로 만든 용기로 구성된 과열저감기(de-super-heater), ② 여러 개의 보일러로부터 발생증기를 수집하기 위한 원통형의 용기인 증기콜렉터(steam collector), ③ 잉여증기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 원통형의 고압 단열용기인 증기비축기(steam accumulator) 등을 예시하고 있다.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시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해 제8404호로 분류한다.

제8424호의 용어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예 : 모래·가루·알갱이·그릿(grit)·금속 연마제]를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증기 제트 분사기”를 예시하고 있다.

반면 제8404호의 용어에 ‘그을음제거기(soot remover : soot blower)’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그을음 제거기는 그을음과 그 밖의 유사한 퇴적물을 증기나 압축 공기의 분사에 의하여 제거하는 장치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제8404호와 제8419호의 경합 시 제8404호로 분류하는 동일한 이유로 제84류 주 제2호 등에 제8404호와 제8424호가 경합 시에 어느 호가 우선 분류 검토 대상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을 적용해 구체적으로는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해설에 근거해 그을음제거기는 제8404호로 분류한다.

제8424호 해설서에 “보일러용 증기분사식 그을음제거기(제8404호)”를 제8424호에서 제외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스탬프용 박 분류 사례 - 2024년도 8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흥 관 | 부산세관 분석실

###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인쇄란 글 또는 그림을 찍어내는 과정으로 잉크를 사용해 프레스기로 종이나 천 따위에 박는 것을 말한다.

몇 가지 주요 인쇄의 종류, 원리와 방식 및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 오프셋 인쇄(Offset Printing)

대표적인 평판 인쇄 방법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인쇄 유형이다. 유연한 고무판으로부터 피인쇄체에 간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대량 인쇄 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 디지털 인쇄(Digital Printing)

오프셋 인쇄와 달리 컴퓨터로 작업된 데이터를 판을 만들지 않고 바로 인쇄하는 방식이다.

초기 세팅 시간이 짧아 빠른 인쇄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인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소량 인쇄에는 적합하지만, 대량 인쇄 시에는 오프셋 인쇄 대비 비경제적이다.

- 그라비아 인쇄(Gravure Printing)

오목판 인쇄 중 하나로 종이 인쇄와 달리 동판을 이용한다. 주로 식품 포장지와 같은 비닐 포장재 인쇄에 주로 사용된다. 오프셋 인쇄보다 제작비가 높아 특수 인쇄나 대량 인쇄에 적합하다.

- 플렉소 인쇄(Flexo Graphic Printing)

블록판 인쇄의 일종으로 유연한 수지나 블록판을 사용해 양각 부분에 잉크를 묻혀 인쇄한다. 건조형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 후 빨리 마르고 인쇄비,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급 인쇄에는 적당하지 않다.

- 금박 인쇄(Stamping)

인쇄물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볼록하게 만든 금형이나 수지판으로 얇은 금속막(금·은·청·녹색 등)을 열을 가해 압착 가공해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주로 고급 포장박스나 명함의 마크, 스티커 제작에 많이 사용된다.

- UV 인쇄

UV 잉크를 사용해 자외선을 비춰 건조하는 인쇄 방식이다. 오프셋 인쇄, 스크린 인쇄에서 응용하며 재질의 선택 폭이 넓은 편이다. 가공하기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잉크 고착 및 건조가 어려운 PP·PVC 등 특수 재질 인쇄에도 사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오프셋 인쇄보다 발색이 다소 탁한 편이며 제작단가가 높다.

- 스크린 인쇄(Screen Process Printing)

실크 인쇄 혹은 실크 스크린 인쇄로도 많이 알려졌다. 공판인쇄 방식으로 필요한 화상 이외의 부분을 막고 그 안에 인쇄 잉크를 부어 스크린 내면을 가압하면서 움직여 잉크가 판막이 없는 부분의 망사를 통과해 피인쇄체에 인쇄하는 방식이다. 오프셋 인쇄에서 표현할 수 없는 원단, 아크릴, 유리 등 특수 재질이나 두께가 있는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색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없으며 제작 단가가 높다.

- 패드 인쇄(Pad Printing)

아교나 고무 같은 탄성체 표면에 인쇄한 뒤 피인쇄체에 전사해 인쇄하는 방법이다. 요철이 심한 것, 달걀, 유리 제품과 같이 가압하면 깨지기 쉬운 것, 작고 요철 곡면이 있는 것 등에 주로 사용된다. 사용법이 다양할 뿐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패드 인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린팅 공정법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인쇄 방식 가운데 금박 인쇄(Stamping)용 재료인 스탬프용 박(箔)의 품목 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 2. 분류 사례

- 개요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금속(알루미늄) 등을 증착시킨 스탬프용 박(제시 규격 : 12 $\mu$ m × 1,510mm × 12,000m/Roll)
- 용도 : 스탬프용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3212.10-0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212.10호에는 ‘스탬프용 박(箔)’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스탬프용 박(箔 : foil)

이 물품[블로킹 포일(blocking foil)이라고도 한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얇은 시트(sheet)로 되어 있다. (1) 금속가루(귀금속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glue)·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2)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예

를 들어, 종이·플라스틱) 위에 증착·음극 스퍼터링 등의 방법으로 부착한 것. 손이나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서적 표지나 모자띠 등의 인쇄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서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금속(알루미늄) 등을 증착한 스탬프용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2.10-0000호에 분류했다.

###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
류	(제32류) <전략> …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 <후략>
호	(제3212호)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 … <중략> …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HSK	(제3212.10 소호) 스탬프용 박(箔)

### 4. 품목분류 유의사항

금속을 경미하게 증착한 플라스틱 필름은 제3920호에 분류되지만, 스탬프용 박인 경우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따라 제39류에서 제외돼 제3212호(제3212.10호에 특개)에 분류됨을 유의하자.

#### ■ 관세율표 제3212호 용어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 … <중략> …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 ■ 관세율표 제3212.10 소호 용어

**스탬프용 박(箔)**

#### ■ 관세율표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제2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마. <전략> …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 5.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3212.10-0000호
품명	Stamping foils; gold-301Y, Silver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금속(알루미늄) 등을 증착시킨 스탬프용 박(제시 규격 : 12<math>\mu</math>m × 1,510mm × 12,000m/Roll)</li> <li>- 용도 : 스탬프용</li> </ul>

관련  
이미지



## 플라스틱 필름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플라스틱 필름의 최초는 셀룰로이드 필름 롤이다. 1880년대 영화산업에서 종이 필름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쉽게 훼손되는 종이 특성상 오래 보존하기 힘들 뿐더러 영사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지 이스트만(George Eastman)은 플라스틱 소재의 ‘투명 셀룰로이드 필름 롤’을 개발했다. 셀룰로이드는 녹나무에서 추출한 고형분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의 탁월한 내구성과 잘 늘어나는 성질 덕분에 빠른 속도로 영사기에 돌려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필름형 포장재를 ‘비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폴리염화 비닐에서 온 말이다. 실제로 대부분 플라스틱을 필름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관세율표에서는 플라스틱을 제39류에 분류하고 있으며, 판·시트·필름 등의 형태일 경우 제3919호~제3921호에 분류될 수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연한 파란색계 플라스틱 필름으로 ‘부직포’인 제5603.14-9000호로 신고했다.

본 물품은 단순 부직포로만 만들어진 시트가 아닌, 에폭시 수지/부직포/플라스틱 필름/부직포/에폭시 수지로 적층된 필름으로 제39류에 해당하는 수지와 제56류에 해당하는 부직포가 함께 적층된 것이다.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는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을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 또한 부직포 양면에 에폭시 수지로 도포해 육안상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제56류에서 제외되며 제39류에 해당된다.

제39류 총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 <중략> …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 아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중략> …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스틱 필름의 양쪽 면에 부직포를 적층하고 양쪽 부직포에 에폭시 수지를 완전히 도포해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9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NONWOVEN CLOTH	5603.14-9000 (FCN1 0%)	Other plastic film	3921.90-9090 (FCN1 2.1%)

## 지구 온난화, 다이아몬드로 막는다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온난화와 그에 따른 이상기후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폭염과 한파, 태풍, 폭우, 폭설, 산불 등이 예상을 뛰어넘어 강력한 규모로 반복되는가 하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연평균 669명이었던 사망자가 2010년대 들어 1만 2,566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미국 바이오 기업 긴코 바이오웍스(Ginko Bioworks)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바이러스 발생이 급증해 2050년에는 사망자가 12배나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공중 보건에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떠오르자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려는 기술, 이른바 ‘태양 관리 지구 공학(solar geoengineering)’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진이 매년 성층권에 다이아몬드 미세입자를 뿌리면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에어로졸로 뿌리는 물질로 이산화황, 산화알루미늄, 다이아몬드 등을 선정하고 이들 7종의 태양광 감소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그중 다이아몬드 입자가 태양광 반사 효과가 가장 뛰어나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최적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매년 500만톤의 다이아몬드 입자를 15년간 뿌렸을 때 영향을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이언스에 따르면 인공 다이아몬드 입자를 성층권에 십수 년간 뿌리려면 약 175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5조 달러(약 24경 원)는 세계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아무리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라해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공염불이 아닐까 한다. 또한 부작용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표에서 다이아몬드는 제7102호 ‘다이아몬드(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에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동소체(allotropic form)이며 결정질로서 순수한 상태에서 매우 높은 굴절율과 분산력을 갖는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것으로 알려진 광물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장식품이나 의장품을 제조할 때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해설서에서 “다음의 것을 분류하지 않는다”며 ‘(a) 다이아몬드 더스트(dust)와 가루(제7105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나 팔찌 등으로 된 제품은 제7116호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의 제품’에 분류된다.

# 논문모집

##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원고 분량

20매 내외

###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 문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9호\_2024.12.2.

# 최신개정법령

## 부령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http://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령

###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090호, 2024.11.29.)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성(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나. 이성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성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7.00
중국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s Co., Ltd.)	7.98
	3. 그 밖의 공급자	7.98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필리핀 FTA 발효를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4호, 2024. 3. 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4호, '24. 3. 29.)

#### 2. 개정사유

- 한-필리핀 FTA\*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 국회 본회의 비준 완료(11.14), 12월 중 발효 예정

#### 3. 주요 개정내용

- 필리핀 협정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
  - 필리핀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28, §34, §35, 별표3)

고시 조항	개정내용
§28(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소급발급” 문구 기재
§34(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진정등본” 보증문구 기재
§35(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정정발급 절차 규정 (잘못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하거나 신규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발급)

####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 5. 개정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4. 12. 00.

7.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 12. 16.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7968), 권영미주무관(042-481-3206)
-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28호, 2021.2.2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2.18(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규칙명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28호, '21. 2. 26.)

### 2. 개정사유

-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반영(법 제253조 제3항, '22.12월 개정)
-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기한을 통합하고, 객관성 강화를 위한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

### 3. 주요 개정내용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추가(제2조)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출입자 등의 의미확대 및 주요 용어 정의에 추가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신고 대상 명시(제10조)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
-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대상자 추가(제13조)
  - 수출입자 등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관보류 요청 기한 통합(제14조)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통관보류 요청기한을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통합

□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제24조)

- 특허권 등 난이도 있는 지재권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확대

4.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4. 12. 00.

7. 의견 제출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 김상훈 사무관(042-481-7923), 장성문 주무관(042-481-7836)
- 제출기한 : 2024.12.18.
- 제출방법 : 이메일(smjang90@korea.kr), 팩스(042-481-7829)

※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5, '24.4.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12.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규칙명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호 '24.4.1.)

### 2. 개정사유

-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sup>(제69차~제73차)</sup>”와 “HS 품목분류의견서<sup>(제73차)</sup>”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3. 주요 개정내용

- ① HS 해설서 일부 개정(WCO 제69차~제73차 HS위원회 결정)
  - WCO 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 사항 반영 및 오타 수정
    - 제2404호의 범위 명확화, 제29류의 마약과 향정신성 일람표 신규 물질 추가, 제44류의 부속서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개정 등
- ②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3차 HS위원회 결정)
  - 꼬투리를 제거한 냉동 풋대두(제1201.90호), 코코피트 벽돌(제1404.90호), 과일주스 21%를 함유한 무탄산 음료(제2201.10호), 과일맥주(제2203.00호) 등 27개 품목

### 4. 개정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 별첨

###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6. 시행일자 : 2024. 12. 00.

### 7. 의견 제출

- 제출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박선민 사무관(☎ 042-481-7642), 임덕호 주무관(☎ 042-481-7641)
- 제출기한 : '24. 12. 00.
- 제출방법 : 이메일(customslab@korea.kr)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55호, '24.10.31)으로 통합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181호, '22.1.29.)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 1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규칙명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181호, 2022. 1. 29.)

### 2. 폐지사유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함으로써 본 훈령은 폐지함.

### 3.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보세판매장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7호, 2023.9.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②「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③「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 2021.3.30.)

###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57호, 2023. 9. 27.)

### 2. 폐지사유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통합함으로써 본 고시는 폐지함.

### 3.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보세판매장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2.21.)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②「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③「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 2021.3.30.)

###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9호, 2024.2.21.)

###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❶「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❷「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❸「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호, 2021.3.30.)을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 3.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 2024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 2024 관세법령집

###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 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http://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http://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